## LEGAL UPDATE

HMP LAW

2021, 07, 16,

법무법인(유) 충정

# 2021년 상생협력 분야 동향

## 관련 구성원

#### 김 시 주 변호사

T 02.772.2747

E sjk@hmplaw.com

#### 안 영 은 변호사

T 02.772.2742

E yean@hmplaw.com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수단이 강화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근래 들어 상생협력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생협력법은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과 규정이 유사하고,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의 법 집행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상생협력법에 대해 낯선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충정은 상생협력법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 영 열 변호사

T 02.772.2778

E youngkim@hmplaw.com

#### 이 선 주 변호사

T 02.772.2841

E leesj@hmplaw.com

## 임 현 진 변호사

**T** 02.772.2864

E yimhj@hmplaw.com

## 1.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개정 사유] 구 상생협력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구 상생협력법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한 것이 사실상 제재수단의 전부여서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법은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상생협력법 제27조 제2항, 제27조 제3항, 제41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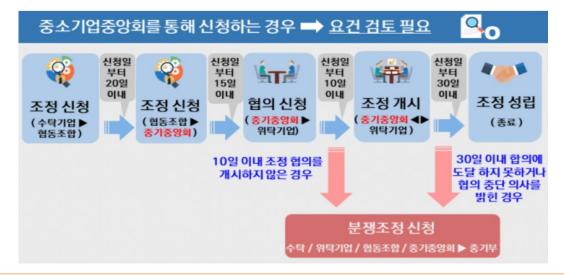
개정 전	개정 후
• 위법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 • 개선 요구 미이행시 공표 조치	<ul> <li>위법행위에 대한 개선 요구</li> <li>위법행위에 대하여 납품대금 지급 등 시정명령</li> <li>개선 요구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시 공 표 조치</li> <li>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li> </ul>

[기대 효과] 금번 개정법을 통해 시정명령제가 시행되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위탁기업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

[개정 사유] 구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제도 활용이 미미하였고,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개정 내용] 금번 개정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추가하여 중소기 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할 수 있 도록 하였음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항)





[기대 효과] 금번 개정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진행할 경우 조정협의 성과가 제고되고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4. 21.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지하였음

[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 받은 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제1항). 또한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가령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 등)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포함)이 수탁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제2항)

[가이드라인 내용] 금번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개요 ② 공급원가 및 공급원가 변동 판단기준 ③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주체 (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별 신청요건 ④ 납품대금조정협의의 절차 (조정 신청 - 조정 협의 - 협의 종료) ⑤ 기타 상생협력법 위반시 조치사항, 보복조치 금지, 벌점 부과 및 경감 기준관련 내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4.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부당 감액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부과

[개정 사유] 구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 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음

[개정 내용] 위탁 기업이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부당감액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상생협력법 제25조 제3항). 위탁기업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상생협력법 제26조, 제27조)



개정 전	개정 후
개성 선 납품대금 부당 감액시 이자 지급 관련 규정 없음	• 위탁기업은 부당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위반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음

[기대 효과] 금번 개정법을 통해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생협력법이 최근 수탁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개정된 바, 위탁기업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탁기업으로서는 개정 법령의 집행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충정의 공식적인 견 해나 법률적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